

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8. 25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8. 25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9. 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진표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복지시설을 설치,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 도모
-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

나. 주요골자

-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(안 제4조)
-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범위 내 경비지원(안 제7조)
-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(안 제8조)
-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협약 해제(안 제11조)
-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.(안 제12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9월 준공되는 보훈회관 청사 규모는?	○ 5층 건물로 부지 224평, 연면적 574평
○ 위탁시 보훈단체에서 운영하는가?	○ 민간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성격상 보훈 단체에 우선적으로 하고자 함
○ 보훈단체는 운영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?	○ 운영해 보아야 알겠지만, 보훈 6개 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임
○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?	○ 운영비는 모두 지원해 주고, 관리만 위탁하는 것임
○ 운영비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가?	○ 인건비, 운영비, 관리비 등 월 1천만원씩 연간 1억 2천만원 정도임

- 위탁을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의도적으로 특정단체를 바꾸기식 인상이 있음
그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있는가?
- 보훈단체에 위탁하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를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?
- 수탁자의 운영평가는 누가 하는가?

- 문장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음. 보훈회관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임
- 보훈회관은 일반 사회복지관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불필요하다고 보며 다만, 시설관리만 문제가 되는데 보훈단체협의회에서 관리하며 큰 문제는 없을 것임
- 시에서 함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보훈회관 설립목적이 보훈단체를 위한 것이므로 보훈단체에 위탁 우선권을 주는 것도 바람직함

나. 반대토론

- 조례상에 위탁대상 단체 중 어느 한 단체(보훈단체)를 우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

5. 수정안의 요지

- 별첨 참조

6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367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9. 2
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금년 9월에 준공예정인 보훈회관의 운영권을 안 제4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되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은,

- 보훈회관이 비록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설립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탁운영 단체로 보훈회관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의도적으로 특정단체를 봐주기식 특혜의혹의 소지를 불러 올 수 있음

2. 주요골자

- 안 제4조의 내용 중 “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.”라는 내용 삭제

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 내용 중 “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.” 삭제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로 <u>하되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할 수 있다.</u>	제4조(운영의 위탁)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등에우및자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보훈회관(이하 “보훈회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보훈회관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07-7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보훈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2.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운영의 위탁)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을 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.

제5조(시설의 운영)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(시설물의 이용)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부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
2.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

제7조(지원)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보훈회관을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양도금지)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본 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
제10조(원상복구)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,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위탁협약 해제)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
3.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
4.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

제12조(손해배상) ①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.

②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제13조(지도감독)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